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3
----------	-----

2022년 9월 28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김원중 의원 (찬성의원 40명)
- 나. 제 안 일 : 2022년 8월 29일
- 다. 회 부 일 : 2022년 9월 2일
- 라. 상 정 일 :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2년 9월 21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원중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 공공미술을 활성화하고 작품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정책, 제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해 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안 제5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2. 9. 7. ~ 9. 11.)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 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공공미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

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는 현행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 공공미술의 정책, 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¹⁾하기 위하여 설치(2017.11.19.)해 5년간 운영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부칙 제10조에 따라 기한 만료(2022.11.18.) 예정임

1)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미술의 정책, 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이하 "공공미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공공미술위원회의 기능) 공공미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미술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미술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
4. 공공미술 활성화 방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시,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요청하고, 공공미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미술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미술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

□ **공공미술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설치 목적: 공공미술의 정책, 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자문·심의
- 설치 시기: 2017. 11. 19.
- 존속 기한: 5년(조례 부칙 제10조)
- 심의 대상: 공공미술 관련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제도 개선,
미술작품 설치, 활성화 방안 및 사후관리 등
- 위원 구성: 정원 15명 / 현원 11명
 - (위원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 (위 원) 미술·기획·건축·조경·유지관리·디자인·도시계획 등 전문가 또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 위원 임기: 1년(1회 연임가능)
- 개최 주기: 월 1회(집합 또는 서면)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2는 오는 11월 18일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위원회의 자동 폐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 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 (생 략)	제5조(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5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1월 18일까지로 한다.</u>

○ 다만, 현행 조례의 부칙 제10조에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본칙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재차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됨

- 또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현행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 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보완하고 명확한 조문 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 칙

제1조~제9조(생략)

제10조(존속기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현행 조례 존속기한 부칙을 삭제함
-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3
----------	-----------

제안연월일 : 2022년 9월 28일
제안자 : 도시계획균형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현행 조례 부칙의 존속기한 부칙을 삭제함
-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조례 제6471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1월 18일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5조(공공미술위원회 의 설치) (생략)</p> <p><u><신 설></u></p> <p>부칙<제6471호,2017.5.18.> 제1조~제9조(생략) <u>제10조(존속기한) 서울 특별시 공공미술위원 회의 존속기한은 5년 으로 한다.</u></p> <p>부칙<제7724호,2020.10.5.> <u>이 조례는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제5조(공공미술위원회 의 설치) (생략)</p> <p><u>제5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1월 18일까지로 한 다.</u></p> <p>(현행과 같음)</p> <p>부칙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u></p>	<p>제5조(공공미술위원회 의 설치) (생략) (현 행과 같음)</p> <p><u>제5조의2 <삭 제></u></p> <p>부칙<제6471호,2017.5.18.> 제1조~제9조(생략) <u>제10조 <삭 제></u></p> <p>부칙 <u>제1조(시행일) 이 조례 는 2022년 11월 19일 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존속기한) 서울 특별시 공공미술위원 회의 존속기한은 2027 년 11월 18일까지로 한 다.</u></p>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471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1월 18일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 · 구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부칙<제6471호,2017.5.18.> 제1조~제9조(생략) <u>제10조(존속기한) 서울특별시 공공 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 로 한다.</u></p> <p>부칙 <u>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부칙<제6471호,2017.5.18.> 제1조~제9조(생략) <u>제10조 <삭 제></u></p> <p>부칙 <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존속기한) 서울특별시 공공 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1월 18일까지로 한다.</u></p>